

# 2018년도 제1회 안전총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II. 제 안 사 유

- 법정 의무경비 정산과 사업 공정에 따른 예산 부족분 반영 등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 III. 추가경정예산(안)

#### 1. 총 괄

##### 가.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65,342	170,342	△5,000	△2.9%
일	반 회 계	159,542	159,342	-	0.0%
특 별 회 계	소 계	5,800	10,800	△5,000	△46.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000	8,000	△5,000	△62.5%
	도시개발특별회계	2,800	2,800	-	0.0%

나.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078,221	935,279	142,942	15.3%
일 반 회 계		231,799	213,362	18,437	8.6%
특별회계	소 계	846,421	721,916	124,505	17.2%
	교통사업특별회계	5,900	12,800	△6,900	△53.9%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6,248	69,045	57,203	82.8%
	도시개발특별회계	714,273	640,071	74,202	11.6%

2. 회계별 사업내역

가. 세입예산

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000	8,000	△5,000		
계속사업	소 계	3,000	8,000	△5,00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000	8,000	△5,000	○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설계용역 기간 연장되어 (‘18.05.31. → ‘18.12.31.) 하반기 공사착수가 곤란함에 따라 금년도 국비 50억 예산집행 불가로 부득이하게 감추경	p.273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37,685	19,249	18,436		
계속사업	소 계	37,685	19,249	18,436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104	74	30	○ 다양한 재난사고 증가로 당초 계획하지 않은 지진대비 점검, LP가스 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등 예상치 못한 안전점검 활동 증가 추세로 추경 반영	p.247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12,050	9,818	2,232	○ 서울디자인 거리사업 등 '09년부터 시행한 자치구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추경 필요 (시비지원율에 따라 분담 지급)	p.248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	7,541	5,541	2,000	○ '17년 결정된 미보상 토지의 보상진행이 다소 지연되어 '18년 상반기에 보상함에 따라 '18년 보상 결정된 집행 예정액이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부족분 추경 반영	p.249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5,992	776	5,216	○ 강남순환도로 '16년과 '17년, 용마터널 '17년 발생한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금이 미지급된 상황으로 유료도로법, 실시협약에 따라 재정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	p.250
	한천로 휘봉고교 앞 도로확장 (시민참여)	815	600	215	○ 한천로 휘봉고교 앞 도로확장 사업 대상지 감정평가 결과 평가액과 수용재결 증가예상액이 기 확보예산을 초과하였고 보상대상 필지가 한필지여서 부분집행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상비 추경 반영	p.251

구분	사업명	추경	기정	증감	사유	사업별 설명서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9,062	1,554	7,508	○성동도로사업소 청사부지 유상이관(중량물재생센터 소유 공기업하수도 특별회계)에 따른 부지매입 미납액 추경 반영 - 2008 매각금액(7,748백만원) - 기납부(240백만원)=7,508백만원	p.276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2,121	886	1,235	○노후 된 건설장비(차량)를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여 대기질 개선과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 반영 - 노후 경유차 교체 : 당초 3대 → 변경 10대	p.277

## 2) 교통사업특별회계

###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경	기정	증감	사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0	6,900	△6,900		
계속사업	소 계	0	6,900	△6,900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0	6,900	△6,9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 연장으로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하여 연내 보상비, 공사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전액 감추경	p.274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x3,000) 118,548	(x8,000) 61,345	(x△5,000) 57,203		
계속사업	소 계	(x3,000) 118,548	(x8,000) 61,345	(x△5,000) 57,203		
	동부간선도로(녹천교~ 의정부시계) 확장	(x3,000) 101,753	(x3,000) 43,500	(x-) 58,25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는 동부간선도로 병목구간 해소, 서울 외곽 순환도로와 연계된 간선도로망 구축, 강북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1.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07년 착공하여 현재 11년 넘게 공사 중이며, 지역 주민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많은 민원과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공사비 추경 반영	p.271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x-) 0	(x5,000) 10,000	(x△5,000) △10,00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 연장으로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하여 연내 보상비, 공사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전액 감추경	p.273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16,795	7,845	8,950	○추경 국고보조금 잔액을 조속히 반납하여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불이익 및 이자발생 방지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	-

#### 4) 도시개발특별회계

## 사 업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총 계	260,740	186,538	74,202		
계속사업	소 계	258,840	186,538	72,302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39,836	35,000	4,83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는 '19년 준공 예정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금년 금하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비 추경 예산 확보	p.252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59,350	39,350	20,000	○실시협약서상 미지급된 건설보조금을 조기 지급하여 공정 조기 완료	p.254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9,902	8,702	1,200	○여의상류IC 일원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올림픽대로에서 노들로로 연결되는 진입램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한('19.9) 내 마무리를 위한 추가 사업비 확보 필요	p.255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9,150	5,350	3,800	○'18.8월말 기정예산 전액이 집행될 예정으로 공사비 추가 확보 필요	p.257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28,000	18,000	10,000	○'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건설보조금 조기 투입을 위하여 추경 반영	p.258
	울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14,687	11,187	3,500	○'19년 준공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가 공사비 확보	p.26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매수청구 보상	4,626	4,125	501	○'18년 예산 부족으로 매수 대상 토지 1건에 대하여 일부만 매수(전체 81.8㎡ 중 72.94㎡만 매수)함에 따라 부족분 추경 반영	p.261
	안양교 확장	16,760	9,560	7,200	○안양교 신설교량(구로IC방향)에 저축되는 상수도이설비 및 상부공 시행을 위한 토목공사 등 추경 반영	p.262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사당로 (구) 범진여객~ 솔밭로입구 도로 확장	21,615	14,000	7,615	○현재 도로 확장구간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및 보상완료(예정)구간에 대한 공사비 추경 반영	p.263
	서초역~방배로간 도로확장	32,064	23,064	9,000	○'19.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및 감리비 추경 확보	p.265
	금호로 확장	4,900	1,300	3,600	○금호로 확장공사는 '18.7월 1구간 보상 완료 후 착공 예정이나, 1구간 보상비 집행 후 잔여 사업비로 1구간 건물 부분 철거만 가능 ○사업대상 2구간 건물주의 조속한 보상 요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하여 공사비 등 추경 확보	p.266
	고가차도 철거	9,900	8,900	1,000	○구로고가차도 주변 남부순환로의 보도 폭이 협소(1-2m)하여, 철거공사와 보도확장 공사를 병행추진 하기 위한 추가 공사비 확보	p.267
	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8,050	8,000	50	○시설 노후화 및 근무환경 열악 등으로 2개 사업소 청사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 반영	p.278
신규사업	소 계	1,900	0	1,900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립	300	0	300	○상습정체로 주차장화가 되어가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유지 등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 재검토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대한 재생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고속도로로 단절된 한강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한강변 유희부지에 대한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 예산 확보	p.256

구분	사업명	추경	기정	증감	사유	사업별 설명서
	봉화산길(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100	0	100	○'18년 토지보상을 착수하여 봉화산길 중화역주변 도로확장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추경 반영	p.264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 (금천구 자원재활용처리장)	100	0	100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타당성조사 업무 수수료 지급을 위해 추경 확보	p.268
	아리수로 교통시설물 설치	500	0	500	○아리수로 암사동 신암중학교 일대 지역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 좌회전, 무단횡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 추경 확보	p.269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단속 시설 설치	900	0	900	○내부순환로 소음에 대년간 노출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 내부순환로 성북구 구간 공동주택의 소음 피해 저감 ▶ 내부순환로 인접 14개 아파트단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내부순환로 안전한 도로 조성 - (안전) 차로폭이 좁고 곡선구간인 고가 구간, 터널구간을 통과하는 내부순환로의 차량 속도 통제로 교통사고 위험 저감	p.279

## IV. 검토의견

### 1. 개요

#### 1) 일반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1,595억 42백만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한 2,317억 99백만원임

#### 2)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 :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됨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53.9% 감소한 59억원임

####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62.5% 감소한 30억원임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82.8% 증가한 1,262억 48백만원임

#### 4) 도시개발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과 동일(28억원)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한 7,142억 73백만원임

- 금회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서울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5% 증가한 35조 5,905억 91백만원(총계규모)으로 법정 의무경비를 정산하고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이 중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50억원) 감소한 1,653억 4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3%(1,429억 42백만원) 증가한 1조 782억 21백만원임.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6% 증가한 2,317억 99백만원임.
- 교통사업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교통본부 세입예산에 총괄 계상되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53.9% 감소한 59억원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2.5% 감소한 30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82.8% 증가한 1,262억 48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한 7,142억 73백만원임.

## 2. 분야별 검토 의견

### 가. 세입 예산안

- 안전총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9% (50억원) 감소한 1,653억 42백만원이며,
- 국비보조 사업인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50억원 감소함에 기인한 것인데,
- 구리시 구간 민원<sup>1)</sup> 등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한 상황으로 금년도 사업비 전액 불용이 예상되어 국비보조금 50억원 전액을 감추경하려는 것임.
-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변 민원 발생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해되나 이미 내시된 대규모 국비보조금마저 감액해야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도로 사업들의 기본계획 초기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다 충실히 이행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진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

1) 구리IC 인근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요구 민원에 따라 방음터널 추가설계 중임.

## 나. 세출 예산안

### (1) 일반회계

#### 1)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업별설명서 p.247)

- 동 사업은 계절별, 시기별로 재난에 취약한 도시 위험시설에 대해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 실시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7천 4백만원 대비 3천만원이 증가한 1억 4백만원을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03,900	73,900	30,000	
사 무 관 리 비	102,500	72,500	30,000	◦ 안전점검 5회 × 6,000(위원수당) = 30,000
자 산 취 득 비	1,400	1,400	-	

- 증가 사유는 포항 지진('17.11.15.), 타워크레인 붕괴('17.12.9.), LP가스 폭발('18.5.7.), 용산 노후건물 붕괴 사고('18.6.3.) 등의 발생으로 각종 안전점검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인데,
- '18년 8월 기준 안전점검을 10회 실시하여 기정예산의 93%인 6천 9백만원을 기집행하고 잔여예산이 5백만원으로 매년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추석대비 점검', '동절기 점검', '공사장 화재점검' 등 하반기 안전점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부족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려는 것임([표] 참조).

[표] 2018년 집행내역

예산 편성액	집행내역				잔액
	계	점검 수당	회의 수당	기타사무관리비	
73,900,000	68,912,890 (93.25%)	56,968,000	2,450,000	9,494,890	4,987,110 (6.74%)

[표] 도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18.8월 기준)

연번	점 검	일 자
1	타워크레인 합동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점검	2018-02-21
2	소규모 숙박시설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전문가 점검	2018-03-06
3	설날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점검	2018-03-29
4	지진 안전점검	2018-04-04
5	화재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2018-05-02
6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점검	2018-07-10
7	이동식크레인 안전점검	2018-07-16
8	LP가스 사용 취약시설 합동안전점검	2018-07-17
9	우기대비 용벽 특별점검	2018-08-01
10	우기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2018-08-06
11	추석대비 점검	예정(9월)
12	재난위험시설 점검	예정(10월)
13	동절기 점검	예정(11월)
14	공사장 화재 점검	예정(12월)
15	각종 기동 점검	예정(수시)

- 한편,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표] 참조), 2015년 2억원에서 2017년 1억 15백만원으로, 그리고 2018년에는 7천 4백만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 최근 3년간(2015~2017)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2015년	200,000,000	68,985,870	131,014,130	34.49%
2016년	117,000,000	110,237,840	6,762,160	94.22%
2017년	115,400,000	102,851,080	12,548,920	89.13%

- 사업의 특성 상 수시로 발생하는 불특정 사고 또는 현안에 따라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점점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하겠음.

## 2) 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사업별설명서 p.248)

- 동 사업은 도로 위 가공배전선로를 지중이설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8억 18백만원 대비 22억 32백만원이 증가한 120억 5천만원을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049,864	9,817,750	2,232,114	
시설비	9,817,750	9,817,750	-	
배상금등	2,232,114	-	2,232,114	○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용 2,232,144

- 이는 '09년부터 시행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서울거리 르네상스사업, 대학가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하여 자치구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중 서울시 분담분 지원을 위한 것으로,
- 소송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2009년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허가 통신선, 즉,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제한전과 전주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거나 임대차 계약도 없이

통신선을 전주에 설치한 경우의 지중이설과 관련하여 시비 지원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설토록 함에 따라 당시 통신사업자가 부담했던 이설공사 비용을 서울시 및 자치구에 청구한 사항임.

- 지중화 사업 당시 서울시는 “전기(통신)설비 이설·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2009.8.18.)<sup>2)</sup>”에 따라 이 같은 무허가 통신선에 대해 공사비를 통신사에 전액 부담시켰는데, ‘13년 11월 통신사업자가 제기한 ‘강남구 언주로 통신선 지중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sup>3)</sup>하였고,
- 이를 계기로 ‘14.6.20일 양천구청 등 12개 구청 역시 동일 쟁점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17.11.29일 모두 패소함에 따라 관련 소송비용을 서울시와 자치구 간 당초 지중화사업 분담비율에 따라 총 22억 32백만원 을 증액편성한 것임.

**[패소한 12개 사업의 소송비용 부담]**

- 당초 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율에 따라 소송비용(이자포함) 지원
  - 디자인 서울거리(6) 시비 50%, 르네상스 사업(5)은 시비 60%
  - 대학가 가로환경사업(3), 은천길 도로확장, 난곡 신교통수단 등은 시비 100%
- 변호사 선임 등 기타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원칙에 의해 자치구 부담

연번	자치구	사업명	소송비용 지급금액	분담비율 (시:구)	시비지원	
					산출내역	지원예정액
1	광진구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133,260,000	50:50	66,630,000	66,630,000

2) 이설·지중화 비용부담 기준

Ⅰ 전기(통신)사업자 전액 부담

- 적용대상: 한전 전주 및 KT 전신주 등 허가받은 시설물

- ‘도로공사’로 인한 타공사의 경우

- 확장된 도로나 다른 도로로의 ‘지장 이설’인 경우

- 근거: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 부대공사의 비용은 감면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자가 부담하여야 함

3) LG유플러스(원고)에 지중화사업비 전액 지급

2	동대문구	왕산로 디자인 서울거리 서울시립대주변 가로환경개선 사업 천호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466,442,530	50:50 100: 0 60:40	80,843,100 102,524,925 121,338,838	304,706,000
3	성북구	동덕여대주변 가로환경개선 사업 성신여대주변 가로환경개선 사업 보문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76,753,887 33,676,459 180,781,628	94: 6 93: 7 60:40	72,148,653 31,319,106 108,468,977	211,936,000
4	도봉구	도봉산길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71,248,580	50:50	35,624,290	35,624,000
5	마포구	서교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153,918,447	50:50	76,959,223	76,959,000
6	양천구	신월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75,626,660	50:50	37,813,330	37,813,000
7	구로구	디지털단지 르네상스 조성	112,213,520	60:40	67,328,112	67,328,000
8	금천구	시흥대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114,775,310	60:40	68,865,186	68,865,000
9	동작구	사당로 디자인 서울거리조성	119,436,690	50:50	59,718,345	59,718,000
10	관악구	서울대주변 걷고 싶은거리 조성 은천길 도로확장사업 난곡신교통수단 건설사업	1,007,914,575	90:10 100: 0 100: 0	28,639,389 272,523,139 703,696,673	1,004,859,000
11	서초구	방배동 젊음의 카페거리 지중화	38,735,480	0:100	-	-
12	강북구	4.19길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496,128,000	60:40	297,676,800	297,676,000
	계		2,866,453,679			2,232,114,000

○ 문제의 발단이 된 2009년 ‘서울시 전기(통신)설비 이설·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의 경우 무허가 통신선로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96조<sup>4)</sup>에 준하여 이설·지중화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설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한 것인데,

○ 이에 반해 「전기사업법」 제72조의2<sup>5)</sup>(‘11.3.30. 신설)에 따

- 4)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 5)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

라 2011년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sup>6)</sup>에서는 지중이설사업을 특정하여 지자체장의 요청에 의해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어 패소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됨.

- 이처럼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강제하는 불합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행정권한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 3)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감면 재정지원 (사업별설명서 p.250)

- 동 사업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민자도로(용마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통행 차량 중 공공목적 차량, 경차량, 사회적약자 차량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시가 사업시행

---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6)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자에게 감면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7억 76백만원 대비 52억 16백만원 증가한 59억 93백만원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992,808	776,309	5,216,499	
사무관리비	5,992,808	776,309	5,216,499	◦강남순환 : 16년 발생분 1,312,431,200원 17년 발생분 3,102,364,170원 ◦용마터널 : 17년 발생분 801,703,300원

- 이는 강남순환도로의 '16년, '17년 통행료 감면분 44억 15백만원과 용마터널 '17년 통행료 감면분 8억 1백만원에 해당하며, 여기에 통행료 감면 재정지원금 지급연체이자는 빠져 있는데,
- 그 이유는 민자사업자가 2017년도분까지는 금년 내에 지급될 경우에 한해 지급연체이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표명에 따른 것으로 본 추경예산 집행에 앞서 이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표]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감면 재정지원 연차별 지원 계획

(단위:백만원)

	2015	2016	2017
계	619	2,088	3,904
용마터널	619	776	801
강남순환도로	-	1,312(`16.7월~12월)	3,103
비 고		강남순환미지급	예산요청

- 참고로 용마터널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되어 온 민자사업들(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주무관청에

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통행료 면제·감면 금액에 대한 3가지 선택지원(재정지원, 무상사용기간 연장, 통행료 인상)이 가능한 반면,

○ 2007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들(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등)은 통행료 면제·감면 차량을 일정비율로 통행량에 반영해 통행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면제·감면 차량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는 것이 특징임.

○ 따라서, 면제·감면된 통행료를 금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용마터널과 같이 정산개념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비율로 통행료에 반영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행정효율은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으로 통일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 (사업별설명서 p.276)

○ 동 사업은 증량물재생센터 내 위치한 성동도로사업소가 노후·협소하여 이전 및 신축하면서 발생한 부지매입비를 정산하기 위해 기정예산 15억 54백만원 대비 75억 8백만원 증가한 90억 62백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9,061,938	1,553,618	7,508,3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3,200	343,200	-	
공공운영비	178,255	178,255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0	38,000	-	
특정업무경비	350,325	350,325	-	
시설비	7,958,075	449,755	7,508,320	성동도로사업소 부지매입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7,508,320
자산및물품취득비	194,083	194,083	-	

- 이는 '08년 현 청사부지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매입하며 매입대금 총 77억 48백만원 중 기납부한 2억 4천만원을 제외한 잔여금 75억 8백만원을 금회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려는 것으로,

'08년 매각금액	-	기납부	=	미납액
(7,748,010천원)		(239,690천원)		(7,508,320천원)

- 성동도로사업소는 중량물재생센터(하수도 시설) 내 성동구 용답동 250번지 외 4필지(11,229m<sup>2</sup>)를 '06.11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09.11월 신청사를 건립하여 입주한 후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음.
- '08년 당시 청사부지를 중량물재생센터로부터 매입한 후 잔여 미납금에 대해서 예산부족 사유로 현재까지 예산편성이 지체되다가 '18년도 청사부지가 '하수도특별회계' 재산에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채권-채무관계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매입대금 납부가 불가피해진 상황임.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하수도특별회계’ 재산인 청사부지를 ‘일반회계’로 매입하면서, 10년이 경과하는 현재까지 잔여 매입대금 지급을 미뤄왔다는 것은 회계간 자본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했다는 측면에서 시정되어야 할 것임.

5)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277)

- 동 사업은 도로사업소 도로 유지관리를 상시 정상 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8억 86백만원 대비 12억 36백만원 증가한 21억 22백만원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121,500	886,000	1,235,500	
사무관리비	6,000	6,000	-	
공공운영비	721,000	721,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1,394,500	159,000	1,235,500	◦ 노후 건설장비 교체(7대) 1,235,500

- 이는 당초 3대의 노후 차량(화물중형 2대, 화물소형 1대)을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려던 계획에서 7대(화물대형 5대, 화물중형 1대, 특수중형 1대)를 추가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시가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계획(1부시장 방침 제52호, ‘18.3.14.)’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

한 시행계획(1부사장 방침 제113호, '18.5.17.)'을 연이어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도로사업소의 운행제한 대상 건설장비를 금회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키로 함에 따른 것임.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 자동차
- 시행시기 : '18.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 조치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폐차

- 이에 6개 도로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장비 중 '18.8월 기준 저공해 조치대상('05.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자동차) 38대 중 24대는 이미 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폐차)완료하였고, 나머지 14대는 조치 추진 중으로, 이 중 도로관리과 관리차량 7대를 금회 교체하는 것임.

[표] 저공해 미조치 건설장비 현황

구분	계	매각진행 중	대·폐차 진행 중	진행예정	비고
계	14	3	4	7	
도로관리과	7	-	-	7	
교통운영과	7	3	4	-	교통신호등 관리

※ 교통운영과: 도로교통신호등 관리차량으로 교통운영과 예산으로 구입·관리하는 장비

- 이는 최근 미세먼지가 자연재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전격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이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시의적절한 편성이라 하겠음.

## (2) 교통사업특별회계

### 1)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 확장(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사업별설명서 p.274)

- 동 사업은 서울, 구리 및 남양주 간의 주요 교통축인 북부 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정체 심화 해소를 위한 것으로, 민원에 의해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 교통개선분담금의 기정예산 69억원 전액을 감추경하는 것임.

####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0	6,900,000	△ 6,900,000	
자치단체 간부담금	0	5,900,000	△ 5,900,000	○ 자치단체 부담금(구리시) △5,900,000
시설비	0	1,000,000	△ 1,000,000	○ 보상비 △1,000,000

#### 사업개요

- 위 치 : 북부간선도로 목동IC(중랑구)~구리IC(구리 인창동)
- 규 모 : 폭 4~6 → 6~8차로, 연장 4.78km  
(서울 1.25km, 민자 2.08km, 구리 1.45km)  
※ 총 연장 중 중랑IC 2.08km 구간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에서 공사시행
- 기 간 : '07. 12. ~ '21. 12.
- 총사업비 : 136,800백만원
  - 국 비 62,500백만원
  - 지방비 62,500백만원(서울시 55,250백만원 / 구리시 7,250백만원)
  - LH교통개선 분담금 11,800백만원
  - ※ 구리 갈매지구 광역교통개선금 11,800백만원(서울시, 구리시 각각 5,900백만원 사용)

- 이는 구리IC 인근 소음 및 미세먼지 발생 대책요구 민원(수직방음벽→방음터널로 변경)에 따라 방음터널 추가설계 등 새로

운 과업 발생으로 현재 추진 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연장('18.12.31. 준공 예정)됨에 따라 예상했던 '18년 하반기 착공이 곤란해져 금년도 사업비 전액을 불용하는 것임.

- 동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7)에 따라 국고를 지원받는 서울시, 구리시, 민자 구간으로 이뤄진 광역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구간을 제외하고 서울시와 구리시 구간은 통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림]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공사 위치도

- 이 설계용역 기간이 금년말로 연장됨으로써 당초 공사착공을 위해 편성했던 본 교통개선분담금 69억원과 별개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 100억원도 금회 동일하게

7)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감추경하고 있어 동 사업과 관련하여 총 169억원이 감액되는 것임.

- 이처럼 설계 중에 발생한 민원 하나로 대규모 예산이 감추경한다는 것은 예산사용의 크나큰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 향후 동 사업과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진행하기 보다는 순차적으로 발주하여 기본설계 과정에서 주변 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사업별설명서 p.271)

- 동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확장(폭 4→6~7차로, 연장 5.45km)을 통해 상습정체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35억원 대비 582억 53백만원 증가한 1,017억 53백만원을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101,753,000	43,500,000	58,253,000	
시설비	100,133,000	42,180,000	57,953,000	◦ 공사비 57,953,000
감리비	1,600,000	1,300,000	300,000	◦ 감리비 300,000
시설부대비	20,000	20,000	-	

- 서울시는 '20년 12월 사업 준공을 위해서는 금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781억원(경상가)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 582억 53백만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2019년 1,019억원, 2020년 76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목표 준공일자를 맞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표]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착공~ 현재		2016년 이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편성	집행액	예산편성	집행액	예산편성	집행액	예산편성	집행액	예산편성	집행액	예산편성	집행액
계	467,949	137,506	219,890	94,925	26,459	24,181	43,500	18,400	101,900		76,200	
국비	67,450	47,208	53,875	33,633	10,575	10,575	3,000	3,000	-		-	
시비	350,442	67,636	121,987	43,986	9,855	8,250	40,500	15,400	101,900		76,200	
내분담금	50,057	22,662	44,028	17,306	6,029	5,356	-	-	-		-	

- 설령 금회 추경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18.8월 현재 금년도 공정률이 65%이고, 통상적으로 12월 중순부터는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해당하여 금년 약 3개월도 안 되는 공사가 가능 잔여기간 동안 기정예산 대비 134%에 달하는 추경 증액분을 소화해 낼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겨짐.

## 2) 광역도로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 동 사업은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국토부 훈령 제701호)에 따라 광역도로사업 중 국고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78억 45백만원 대비 89억 5천만원 증가한 167억 95백만원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6,795,375	7,845,375	8,950,000	
국고보조금반환금	16,795,375	7,845,375	8,950,000	

- 이는 다음 [표]와 같이 과거 이미 공사 또는 집행이 완료된 '상도교~호장교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당시 국고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회 당시의 불용액(78억 41백만원)과 지금까지의 발생이자분(11억 7백만원)인 총 89억 5천만원을 일괄하여 반납코자 하는 것임.

[표] 증추경 편성액 세부내역

사업명	계	불용액	반납이자	비고
반납액	8,947,280,877	7,840,767,347	1,106,513,530	
상도교~호장교	510,487	500,000	8,470	2017년 불용
태릉~구리IC	950,555	900,000	48,540	2015년 불용
고양~신사	4,720,548,259	4,187,508,683	533,037,570	2006~2012년 불용
암사대교	3,900,970,480	3,651,858,664	249,109,810	2006~2015년 불용
동부간선도로	324,311,154	-	324,309,140	2014년 반납 불용액의 이자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규정<sup>8)</sup>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는 2016년 반납이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다음 [표]와 같이 서울시에 환수처분을 요구<sup>9)</sup>한바 있고,

[표]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요청액

세부사업명	불용액	반납액	미반납액
고양 화전~신사(서울) 광역도로	3,225,000	-	3,225,000
덕송~상계(서울) 광역도로	9,288	-	9,288
동부간선(서울) 광역도로	7,013,366	-	7,013,366

8) (10)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9) 광역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불용액) 미반납사업 조치계획 제출(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770, 2016.3.11.)

태릉~구리(서울) 광역도로	139,422	-	139,422
소 계	10,387,076		10,387,076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7회계연도에 ‘태릉~구리IC 광역도로’사업의 ‘14년 불용액분 1억 45백만원을 기 반납하였고, 금년에는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사업의 ‘14년까지 불용액분(78억 35백만원)과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14년까지 불용액분(1천만원) 총 78억 45백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였으며,

○ 다음으로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 5개 사업의 반납액은 차년도에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표]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현황 및 계획('18.8월 기준)

(단위 : 원)

구분	반납 연도	사 업 명	내 역	반납금액	비고
반납 현황	2017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2014년 불용액	144,799,660	감사원 지적사항
	2018	동부간선도로(녹천교~의정부시계) 확장	2014년까지 불용액	7,835,001,060	감사원 지적사항
	2018	덕송~상계간 광역도로 개설	2014년까지 불용액	10,373,940	감사원 지적사항
		소 계		7,990,174,660	
반납 계획 (추경 요청 분)	2018	상도교~호장교간 도로개설	2017년 불용액	508,470	
	2018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2015년 불용액	948,540	
	2018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광역도로 개설	2006~2012년 불용액	4,720,546,253	감사원 지적사항
	2018	사가정길~암사동간 광역도로 건설(암사대교)	2006~2015년 불용액	3,900,968,474	
	2018	동부간선도로 확장	2014년 불용액 반납금에 대한 이자	324,309,140	
		소 계		8,947,280,877	

- 반납시기가 미뤄질수록 각 불용 발생일부터 반납일까지 약 정금리 1.2~2%의 이자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여 금회 추경을 통해 미반납액 전액을 집행하려는 것임.
  
- 따라서, 이처럼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sup>10)</sup>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이자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음.

---

1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2편 Ⅱ. 17. 17-2. 가. (8)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4) 도시개발특별회계

##### 1) 한강변 도시고속도로 재생 및 기능 재정립 (사업별설명서 p.256)

- 동 사업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대해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한강변 유희부지를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해 신규로 3억원을 편성함.

[표] 소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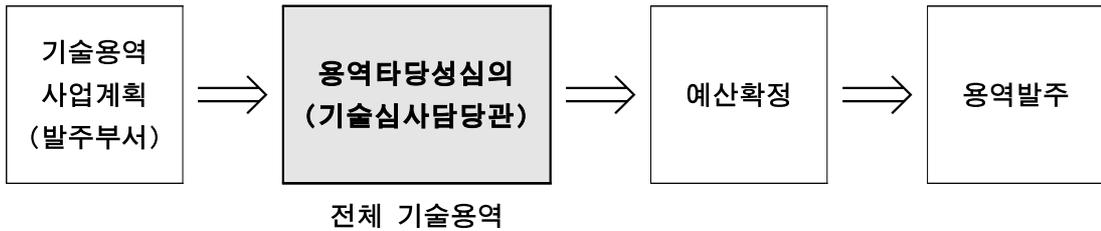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시설비	300,000	-	300,000	◦ 타당성조사 300,000

- 이는 '17.2월 '제1차 서울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착수 ('18.하반기 고시예정)하면서 '18.7월 이에 대한 관계부서 의견 조희 중 용산공원, 용산지구단위계획, 강남지역 재개발 등 한강주변 개발이 가시화됨에 따라,
-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생 및 기능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금회 신규로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동감할만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이 기술용역인 점을 감안할 때,
- 현행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기술심사담당관-6973, '04.11. 25.)'지침에 따라 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용역타당성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 심의대상: 전체 기술용역(도시계획, 전산, 교통, 소방 등 전 기술분야)
- 심의내용: 용역시행의 타당성,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 심의시기: 사업계획 후 수립 예산반영 전
  - 정기: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매년 8~9월)
  - 수시: 당해연도 예산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후 즉시



- 이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만 성급하게 편성하고 심의를 그 이후에 진행하는 불합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신규 용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방침서와 같은 구체적인 기본구상 없이 사업이 출발하고 있어 사업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2) 아리수로 교통시설물 설치 (사업별설명서 p.269)

- 동 사업은 아리수로 암사동 신암중학교 일대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 좌회전, 무단횡단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금회 5억원을 신규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500,000	-	500,000	
시설비	440,000	-	440,000	◦ 교통시설물 설치 440,000
감리비	60,000	-	60,000	◦ 감리비 60,000

- 이는 동 사업구간에서 2014년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공사”를 수행할 때 인근 주민들이 이 구간에 비보호 좌회전과 횡단보도 신설 등을 요구하였고,
- 이에 2014.5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 결과(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1859, '14.5.1.), 4차로 양방향 구간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불합리하므로 공사 중에만 임시로 허용키로 조건부 승인되었던 사항인데,
- 2017.11월 공사 준공을 앞두고 이 구간에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주민들이 재차 동일 민원을 제기하고, 2017.12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과(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6354, '17.12.19.)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내 5개소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유턴차로 등의 교통시설 설치가 승인됨에 따른 것임.
- 도로확장 개통 이후 지금까지 동 구간에서 무단횡단에 따른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금회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조속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 자동차전용도로 구간단속 시설 설치 (사업별설명서 p.279)

- 동 사업은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방음벽 등 방음시설 설치가 곤란한 내부순환로에 구간단속을 적용하기 위해 신규로 9억원을 편성함.

####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900,000	-	900,00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00,000	-	9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메라 설치 = 644,000</li> <li>◦ 전기인입 및 표지판 설치 등 = 256,000</li> </ul>

#### [사업 개요]

- 대상지 :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7.9km)
- 사업내용 : 구간단속 운영을 통한 소음저감대책 시행
- 사업규모 :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10개소 14ea), 표지판 설치 등  
- 내부순환로 본선 4개소(8ea), 램프 6개소(6ea)

구분	방향	유형	차로	카메라 설치 시설	특이사항	설치대수
내부 순환 로 본선	성산	본선	3	단속용 지주(편지식)		2대
	성산	본선	3	단속용 지주(편지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중		2대
	성동	본선	3	VMS, 단속용 지주(문형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중		2대
	성동	본선	2,2	도로표지 지주(편지식)		2대 (내부순환 1대) (북부간선 1대)
내부 순환 로 램프	성산	진입 램프	1	진입시점 지주(문형식)		1대

성산	진입 램프	1	진입시점 지주(문형식)		1대
성산	진출 램프	1	진출시점 도로표지 지주(편지식)		1대
성동	진입 램프	1	진입시점 도로표지 지주(편지식)		1대
성동	진출 램프	1	진출시점 도로표지 지주(편지식)		1대
성동	진출 램프	1	진출시점 도로표지 지주(편지식)		1대

- 사업기간 : 2018.08.~2018.12.
- 총사업비 : 900백만원
- 사업시행 : 서울시설공단(자본적대행사업비)

- 동 사업구간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길음IC 구간(7.9km)은 다년간 기준치<sup>11)</sup>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접 아파트 및 주택 주민들이 다년간 소음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 2017.12월 서울시가 이 구간에 구간단속을 가정하여 소음분석을 실시한 결과, 야간시간대 3~4dB의 소음저감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단속카메라(10개소 14EA),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원래 교통단속카메라의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이나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장도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11) 주거지역 기준으로 주간시간대(06시~22시)는 68dB(A), 야간시간대(22시~06시)는 58dB(A)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본다.

○ 사업은 서울시가 시행하되 설치한 구간단속 시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대부하여 운영토록 할 예정으로 소음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등 건설공사 7건 (사업별설명서 pp.252, 255, 257, 260, 262, 265, 266, )**

○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등 7개 사업은 기정예산 941억 63백만원 대비 331억 36백만원 증가한 1,272억 99백만원 편성함.

**[표] 건설공사 촉진을 위한 추경편성 사업들**

연번	회계	사업명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비고
계			127,299	94,163	33,136	
1	도시개발특별회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39,836	35,000	4,836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는 '19년 준공 예정 사업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금년 금하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비 추경 예산 확보
2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	9,902	8,702	1,200	○ '18년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추가 공종 발생과 유관 기관 협의 사항 이행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액되고 사업기간이 연장 되었는데, '19년 조속한 공사준공을 위하여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 함.
3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 교 남단)	9,150	5,350	3,800		○ '18.8월말 본예산 전액 집행 예정이며, 이후 공정인법 제작 예산이 없어 상당기간 공사 중단이(6개월) 예상됨으로, 공사 중단 없이 원활한 공정관리를 위해 추경예산 확보 필요
4	울곡로(창경궁앞)구 조개선	14,687	11,187	3,500		○ '19년 준공예정 사업이나, 금년 확보된 예산으로는 PSC 아치제작 완료가 불가능해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바, 부족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5	안양교 확장	16,760	9,560	7,200		○ 안양교 신설교량(구로IC방향)에 저축되는 상수관로시설 및 차후 공정한 PF법 및 S.T.Box의 제작·가설 및 기타 상부공 시행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위한 추경 반영
6	서초역~방배로간 도 로 확장	32,064	23,064	9,000		○ '19.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 및 감리비 추경 확보
7	금호로 확장	4,900	1,300	3,600		○ 1구간 공사비 및 2구간 보상비 등 추경 확보 필요

- 상기 사업들은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또는 지연된 공사의 조속한 준공을 위해 부족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이처럼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으나 그 동안 연차별 계획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던 것을 준공연도를 앞두고 부족예산들을 집중투입하여 공정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는 자칫 품질저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바,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등 건설공사 2건 (사업별설명서 pp.254, 258)

-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이하 ‘서부간선’)사업과 ‘서울제물포 터널 건설(이하 ‘제물포터널)’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제1

호에 따른 수익형 민자사업(BTO)<sup>12)</sup>으로,

- 금회 건설보조금<sup>13)</sup> 추가 지급을 위해 서부간선에 200억원, 제물포터널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함.

[표]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59,350,000	39,350,000	20,000,000	◦건설보조금 20,000,000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28,000,000	18,000,000	10,000,000	◦건설보조금 10,000,000

- ‘서부간선’은 실시협약서 상 총사업비 5,200억원(‘07.7월 불변가) 중 건설보조금은 1,351억원(‘07.7월 불변가)이며, ‘제물포터널’은 실시협약서 상 총사업비 4,547억원(‘07.3월 불변가) 중 건설보조금 794억원(‘07.3월 불변가)으로
- 실시협약서에 총 건설보조금에 대한 분기별 분할 지급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제 공정 추진계획에 따른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 ‘서부간선’의 경우 건설보조금 지급계획 상 2018년 소요액이 635억원이었으나, 기정예산 393억 5천만원만 확보했던 상황으로 부족액 241억 5천만원 중 예산 허용범위 내 200억원을 충당하려는 것이며,

12) 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13)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 ‘제물포터널’의 경우 건설보조금 지급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었으나 예산 허용범위 내 100억원을 조기투입하여 공정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설명임([표] 참조).

[표] 건설보조금 지급계획 및 현황

(단위 : 억원, 경상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서울제물포터널 건설		
구 분	건설보조금		구 분	건설보조금	
	지급 일정	지급 실적		지급 일정	지급 실적
2015년	-	-	2015년	-	41
2016년	-	48	2016년	-	-
2017년	332	337	2017년	191	167
2018년	635	250	2018년	199	180
2019년	499		2019년	207	
2020년	408		2020년	161	
2021년	6		합 계	758	388
합 계	1,880	635			

- 건설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만약 시 재정상황으로 인해 건설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서부간선’) 민간사업자가 대출로 총당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비용은 최초통행료 산정 시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민간투자사업의 건설보조금 지급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 재정여건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반대로, 건설보조금이 조기에 투입되는 경우(‘제물포터널’)는 건설보조금 조기 지급에 따라 민자사업자 역시 상응하는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민자사업자와의 명확한 사전협약과 지금까지의 재원조달에 대한 신뢰성 및 협약에 따른 향후 재원조달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기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